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
종류	사업자반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(수익자)	
	메리츠화재해상보	.험주식회사	(무) 알파Plus보장	당보험1410			
보장성	116-81-03	3752	606596**	***	860705-*****	고희경	718,830
	에이아이에이생명5	보험 주식회사	무) 뉴원스	<u>-</u> 톱 3			
보장성	711-87-00	0663	253208**	***	860705-*****	고희경	286,560
	인별합계금액		1,00			1,005,390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03-21*	해****	일반	4,400
6-90-26*	해****	일반	35,100
9-90-01*	예****	일반	14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54,0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54,0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2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23년 합계	10,500,310	330,000	1,126,000	0	11,956,310
1월~3월	0	0	6,450	0	6,450
4월~12월	10,500,310	330,000	1,119,550	0	11,949,86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6,45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17,92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0
신용카드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10,482,39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전통시장	330,00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1,119,550
인별합	계금액			11,956,31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3년 합계	2,637,463	24,000	391,300	0	3,052,763
1월~3월	1,561,160	24,000	318,900	0	1,904,060
4월~12월	1,076,303	0	72,400	0	1,148,703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524-86-01528	네이버파이낸셜 주식 회사	일반	1,563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1,954,96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24,00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386,68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391,30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294,260
인별합계금액				3,052,763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23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희경	860705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102-82-07606	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	종교단체외일반(지정)기부금	90,000	9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9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5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